

명칭 : 거산아파트

주소 : 경북 문경시 신흥로 74

세대수 : 97세대

직책 : 입주자 대표

성명 : 김동수

주소 : 거산아파트 1501호

연락처 : 010-6568-0618

직책 : 감사

성명 : 한 채욱

연락처 : 010-4470-1246

거산아파트 관리사무실 : 054-552-2621

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

규약명 : 거산오피스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

- 성명 : 박수복

- 주소 거산아파트 1102호

-전화번호 : 010-3007-5076

개정안	수정 의견	
	수정안	수정사유
<p>제18조 【동별 대표자의 임기】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라인별 대표자의 사퇴 및 해임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</p> <p>제19조 【임원의 구성】 ① 영 제 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1. 회장 1인 2. 감사 1인 3. 이사 1인</p> <p>제21조 【보궐선거】 ① 임원(회장,감사,이사)이 사퇴 및 해임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출하고,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② 라인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출하고,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22조 【회장 선출공고】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8조 【동별 대표자의 임기】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다.</p> <p>제19조 【임원의 구성】 ① 영 제 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1. 회장 1인 2. 감사 2인 3. 이사 1인</p> <p>제21조 【보궐선거】 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.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,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.</p> <p>제22조 【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】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동별 대표자 결원이 생길 경우 주민이 선출 하여야 함.</p> <p>감사의 정원을 2인 이상 정하도록 경상북도 표준 준칙에서 요구 함</p> <p>보궐선거는 임원 만 하도록 규정 한 것 자체가 경상북도 준칙에 위배되고 궐위 시 선출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 법 위반 임. 선거로 선출 하도록 규정 한 것을 대표회의에서 선출 하도록 한 것은 말이 안됨</p> <p>회장 선출공고 = 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회장만 선출 하는 규약이 어디에 있답니까? 주민이 동별 대표자를 뽑고 그 안에서 임원을 선출 하면 될 일입니다.</p>

<p>제32조 【운영비】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 2. 회장 직책수당 : 매월 10만원 3. 이사 직책수당 : 매월 10만원 4.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: 연간30만원 5. 제68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6. 공동주택관리 전문신문 구독료 	<p>제32조 【운영비】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삭제) 2. 회장 직책수당 : 매월 10만원 3. 감사 직책수당 : 매월 1인당10만원 4.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: 연간30만원 5. 제68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6. (삭제) 	<p>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수정 감사에게 제대로 감사 하라는 취지로 직책 수당을 지급하며 감사 업무를 해태한 경우 그에 상응 하는 책임이 따름 따라서 감사에게 직책 수장을 지급 하여야 함</p>
--	--	---